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 Customs Newsletter

삼정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 Update

캐나다: 상호합의(MAP) 에 관한 지침 개정

2021 년 6 월 1 일 Canada Revenue Agency¹ (이하, "캐나다 과세당국" 또는 "CRA")은 캐나다 조세 협약에 따른 "권한있는 당국(이하, "CA")²의 지원"(상호합의)에 대한 지침인 Circular 71-17R6 을 공포하였으며, 이는 개정 전 문서화되지 않았던 CRA 의 행정 정책이 문서화되는 것을 포함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역

신청인의 캐나다 CA 로의 정보 제출

삼정 KPMG

TAX 6 본부

19 July 2021

KEY CONTACTS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el: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el: 02-2112-0982)

¹ 캐나다 과세당국의 정식 명칭임

² 권한있는 당국(CA)은 국제적인 세무 협의를 하는 주체로, 일반적으로 각 국가의 과세당국 산하 국제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함

CRA 는 신청인이 CRA 의 산하부서인 CASD(Competent Authority Services Division)로부터 식별번호를 발급받은 후 E-Services 를 이용하여 CA 와 관련된 각종 신청 업무를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CRA 는 비공식적으로 최초 신청 건에 한하여 이메일로 업무 요청을 한 후 식별번호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향후 신청인은 E-Services 를 통한 업무 처리 시 해당 식별번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호합의 신청

캐나다 CA 는 정식 접수된 신청서만을 취급하고, 신청 대상거래에 관련된 모든 법인(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이 개별신청서를 각 소재지국의 CA 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자간 상호합의(MAP)의 신청

금번 개정에서는 대략적인 다자간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에 대한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CA 간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캐나다 과세당국이 해당 건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하기 전에 신청 대상 지역 내에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이익(Business Profit) 조정

OECD 모델 협약 제 9 조의 사업이익 조정은 캐나다 소득세법 상의 이전가격 조정에 대한 내용과 다소 상이하나, CRA 는 기본적으로 캐나다의 소득세법상 이전가격 조정에 대하여 MAP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CA 신청서 제출 요건

CA 신청서 제출 요건은 개정 전 요건과 동일하나, CRA 는 신청서 상 반드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CA 신청서의 Part XIII 조정내역
- 신청인의 불복 진행 여부 (신청인은 상호합의와 불복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CRA 는 CA 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신청인의 MAP 접근법 제출 등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였으나, 필요에 따라 신청인은 MAP 접근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 전무
(Tel: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el: 02-2112-0277)



김태주 상무(관세)
(Tel: 02-2112-7448)

이전가격 하향조정

CRA 는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상황에 한하여 캐나다 납세자의 손익에 대한 하향조정을 허용합니다.

- 상대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상향조정을 허용한 경우
- 상대 CA 가 캐나다 CA 와의 상호합의를 접수한 경우
- 조세조약에 따른 신청 기한 내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 상호합의 대상 이전가격 쟁점사안이 캐나다 CA 의 해결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의 책임

CRA 는 CA 지원 및 MAP 신청서를 적시에 제출할 것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에 대한 제척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제척기관과 관련하여 조세조약이 내국세법 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CRA 는 신청인이 캐나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제척기간내에 상호합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득세법 제 152(4)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과 관련한 면제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

금번 개정에서는 캐나다 CA 가 필수 정보를 수취한 날로부터 2년 내 MAP 관련 합의가 도출될 것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소 권리 포기

CRA 는 신청인이 감사 또는 불복과 관련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항소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신청인이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CA 지원을 받을 자격에 충족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CRA 는 CA 가 도출한 합의 내용을 신청인이 인용하는 경우, 합의된 내용과 관련되어 캐나다 내에서 향후 발생가능한 모든 항소권을 신청인이 포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에 따른 이슈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 9 조에 따라 신청인은 이전가격 조정이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6년 이내에 상호합의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사전조사분석에 중점을 둔 이전가격조사](#)



[김현만 상무\(관세\)](#)

(Tel: 02-2112-7542)

러시아의 이전가격규정은 약 10년 전(2012년)에 도입되었지만 이 분야에서의 실제 법적 행사 수준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입니다. 최근 러시아 세무당국이 사전조사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실제 이행되는 이전가격조사는 많지 않습니다. 2020년에는 정부예산 수입의 54%가 세무당국의 사전조사분석 작업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46%는 전통적인 표준 법적 통제 수단의 적용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사전조사분석에 대한 이해

사전조사분석은 세무당국에 유연한 협상 수단을 제공하고, 이전가격조사를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전조사분석은 기본적으로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이전가격조사를 완전히 개시하지 않고도 관계회사 거래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이전가격조사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납세 의무를 조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조사분석 절차는 러시아 연방 세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전조사분석을 요청할 때 세무당국은 종종 세법 93조 및 93.1조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조사분석 중에 세무당국은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높은 세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회사 식별
- 정보 요청 및 수취, 직원 인터뷰, 납세자와의 협의
- 회사가 자발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을 제안
- 납세자와의 합의가 불발될 경우 전면 이전가격 조사 개시

사전조사분석의 일환으로써 세무당국의 요청은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그룹 내 운영에 대한 일반 정보 수집:**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관계회사 거래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청이 접수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추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은 요청은 세무당국이 과세위험이 높은 회사 또는 특수관계 거래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논쟁의 여지가 있는 특정 거래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산출방법 입수:** 세무당국은 특정 거래에 대한 세부 정보 및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세무당국이 예비

작업을 완료하고 특정 관계회사 거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과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은 것은 납세자는 세무당국과 실질적인 대화를 시작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납세 의무에 대한 계산 및 설명 요청:** 특수관계 거래 가격이 정상가격인지 평가하기 위해 세무당국은 적용가능한 이전가격방법을 직접 선택하고, 벤치마킹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특정 납세자의 이전가격에 대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사전조사분석 요청의 일환으로 과세당국은 납세자에게 상기와 같은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치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자발적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납세자는 이전 가격 문서의 데이터와 함께 상세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사전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납세자는 자발적으로 과세표준을 조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관세 Update

“온실가스 배출 수입품에 관세 부과” EU 야심찬 기후변화 대책 현실화될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2035년부터는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금지한다.’

1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유럽이 다른 나라들보다 한 발 앞서 야심찬 기후변화 정책을 내놓았다”면서 “정책에는 세계 첫 탄소국경세 제안 등이 포함돼 무역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EU 집행위가 발표한 기후변화 정책은 12개 입법안이 포함돼 있다고 NYT는 설명했습니다. 탄소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입니다.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이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수입품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밝혔습니다.

연간 1000억원대 부담 '공포'...부품 관세 우려 커지는 항공업계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수입 항공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100%인 관세 감면율은 내년 80%, 2023년 60% 식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오는 2026년에는 면세 조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어져온 항공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는 지난 2001년 제정된 관세법 제89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부품에 적용되는 관세를 없애 항공사들의 정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며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항공정비산업의 국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같은 특례가 일몰 조치를 맞게 된 것은 2013년 미국·유럽연합(EU) 등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정부가 국내법으로 더 이상 특례 조치를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기대와 다르게 FTA를 통한 관세 면제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FTA를 통해 부품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항공기 제작사들이 FTA 체결국에서 해당 부품을 생산했다는 원산지 증명이 필수입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원산지 증명을 위해서는 추가 비용 등이 발생하는데 제작사들이 갑의 위치에 있다보니 국내 항공사들이 요구해도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관세 면제 특례가 사라지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내 항공업계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현재 항공사들이 면제받는 비용 규모는 약 1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향후 항공 수요가 다시 회복될 경우 이 비용은 최대 15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3. 국제조세 Update

최신예규/판례: 조심2019전2522, 2021.06.08

상표권 사용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11.9.1 000를 흡수합병한 후 2011.9.5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주류회사이고, 청구법인의 모회사인000(이하“쟁점지주회사”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2008년 7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주류 사업부문을 000에게 포괄이전하고 000를 설립한 후, 2012.3.23.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지주회사임

청구법인은 2012.2.9 쟁점지주회사와 개별상표권과 CI(Corporate Identity)상표권의 라이선스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개별상표 사용료로 대상매출액의 1%를, CI상표 사용료로 대상매출액의 0.3%를 적용하여, 2012.1.1부터 사용료를 지급하였음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용료의 산정근거로 활용한 공통공통브랜드 라이선스 시가평가는 비교대상회사 및 지표 산정 오류가 있는 등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국내 기업 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율의 최빈값인 0.2%를 적용하고, 쟁점사용료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음

2) 심판원 심리 및 판단

쟁점지주회사가 소유한 쟁점상표의 평가방법은 상증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 5항에 따른 이익접근법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주류회사인 청구법인과 조사청이 선정한 주류업체들의 2006~2010사업연도의 평균영업이익율은 각각 18.26%, 19.22%로 평균 19.49%인 반면, 쟁점상표의 평가와 관련한 브랜드검토보고서에서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한 회사의 업종은 주류업체들이 아니라 식료품 제조업체 등이고, 평균 영업이익율 또한 5.19%로 나타나 애당초 브랜드 검토보고서의 비교대상회사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상표 사용료율(0.2%)은 과세근거 기준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등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브랜드검토보고서 이외에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대법은 2005.05.12 선고2003두 15287판결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 52조 제 2항에서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지주회사의 체계,

역할 및 운영방식 등을 감안할 때, CI사용료과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회사규모 및 업종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사례에서도 의미 있는 정도의 요율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위해 제시한 요율(0.2%)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